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205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,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전단 중 "4월 말 및 10월 말까지"를 "4월 말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고 등) ① 사회적기업은	제17조(보고 등) ①
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	
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	
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	
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	
도 <u>4월 말 및 10월 말까지</u> 고용	<u>4</u> 월 말까지
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	
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	
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방법	
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	
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